

자산배분기준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2008.9

일반원칙

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등 간접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증권 매매와 매매주문 그리고 자산배분시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매매와 매매주문 그리고 자산배분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2. 매매와 매매주문 그리고 자산배분에 있어서 선관의 의무와 고객에 대한 동등한 대우원칙에 따른다.
3. 투자증권 거래시나 자산배분시에 특정수익자나 특정펀드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4. 포트폴리오매니저와 트레이더의 분리 및 사전자산배분원칙을 통해 배분의 공정성과 매매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5. 매매결과를 펀드별로 배분시에는 취득 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한다. 취득 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배분한다.
6. 펀드별 자산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서는 전산으로 기록 유지한다. 자산배분내역서에 정정이 있는 경우와 펀드별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자드 그룹 규정

회사는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라자드 그룹의 규정을 준수하나 양자간에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우선한다.